

특집 I

## 電氣事業法 改正 主要 內容과 電力政策 方向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  
사무관 이종호

### 1. 概說

최근 우리 경제의 위기국면과 맞물려 전력산업 또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여건하에서 거대한 변혁의 길목에 서 있다. 지난해에는 전력소비가 사상최초로 4.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설비예비율은 1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공공부문 경영혁신 방안에 따라 한전과 5개 자회사에서 4천 명을 웃도는 인력이 감축되었다. 중장기적으로는 발전·송전·배전을 수직통합하여 판매의 경우 전국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을 분할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電力産業構造改編(Power Market Restructuring) 方案이 확정되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98년의 電氣事業法 改正은 전력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제한적으로나마 완화함으로써 경쟁기반을 조성하고 대기한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철폐함으로써 전력산업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전기산업의 종류에 일반전기사업·발전사업 외에 特定電氣事業制度를 도입하고 자가발전설비 보유기업의 전기판매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기사업에의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전력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전기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電氣供給 選擇約款制度和 電氣託送制度를 도입하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양도에 대한 인가제 등 20개 규제제도를 폐지하여 전력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지난 '98년에 개정하였던 전기사업법은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과도기의 체제에 맞게 보완된 것이며 본격적인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구

축을 위하여 정부는 올해 전기사업법의 전면개정과 구조개편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하에서는 지난해 개정된 과도기적 전기사업법의 개정경위와 그 개정내용에 담고자 했던 정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 2. 개정경위

정부는 전력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내지 폐지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개정을 추진하였다. 그 경위를 보면 5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한전과의 실무협약과 내부심의로 자체 개정안을 마련하고 1998년 9월 11일 법제처심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1998년 9월 12일 입법예고(예고기간: 9. 12~10. 2)와 관계부처 협의를 하였다.

규제개혁에 대한 심의를 위해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10월 6일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의 심사와 10월 16일 제15차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으며, 신설(강화)규제에 대하여는 10월 15일 자체 심사를 거쳐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 11월 11일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의 심사를 받고, 11월 13일에 규제심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규제심사과정에서는 선택공급약관 신고를 철회하고 보완공급계약 및 전기탁송약관인가를 철회하도록 권고받았다. 한편 9월 12일에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한 법안에 대해 규제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법제처 심사를 받은 후 11월 14일에 차관회의와 11월 19일의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11월 26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제199회 임시회에서 12월 3일 산업자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7

일 법사위에 회부되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2월 29일에 의결되었다.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대통령공포제가를 받아 '99. 2. 8일 공포되므로서 '99. 8. 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 3. 電氣事業法 改正內容과 政策方向

### (1) 特定電氣事業制度 도입

우리나라의 전기사업은 일반전기사업과 발전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유일한 일반전기사업자이며 공기법인 한전이 발전·송전·배전을 수직통합하여 국내발전설비의 약 95%를 운영하면서 송전·배전 및 전기판매에 있어서는 전국을 독점하고 있으며, 민자발전사업자 등 발전사업자는 국내 발전시장의 나머지 5% 정도를 점유하면서 발전한 전기를 한전에 공급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

〈표 1〉 발전시장 점유비중 : '98

(단위 : 천kW, %)

| 발전회사  | 한 전    | 한 화   | 수자원공사및소수력 | 계      |
|-------|--------|-------|-----------|--------|
| 설비용량  | 40,760 | 1,500 | 1,001     | 43,261 |
| 구 성 비 | (94.2) | (3.5) | (2.3)     | (100)  |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를 발전하여 건물단위로 특정될 공급지점의 소비자에 대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특정전기사업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정부에서는 전력산업 전반에 있어서의 경쟁 촉진을 통한 효율제고를 위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방안을 수립하여 지난 11월 16일 공청회를 거쳐 확정하였고, 그 전단계로서 1차적으로 민자발

전의 확대와 함께 발전 및 배전 부문에 제한적인 경쟁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정전기사업제도의 도입이 추진된 것이다. 일반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있어 요금 등 공급조건이 인가제로 운용되는데 반하여 특정전기사업자의 경우 특정한 공급지점의 전기소비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사업이므로 요금 기타 공급조건은 신고제로 운용된다. 또한 특정전기사업에 소요되는 전기의 부족이 생긴 경우, 한전이 그 특정전기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것과 그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기탁송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특정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와 공급지점이 떨어져 있는 경우 일정한 탁송료를 부담하고 한전의 송배전선을 활용하여 전기를 수송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특정전기사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가능성도 있으며 특히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기업이 전기공급의 외주(Outsourcing)를 통하여 전기설비를 외국 전력회사에 매각하고 발전전력을 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외자유치도 기대된다.

## (2) 전기 直供給範圍 확대

현재 한전이 전기판매에 있어서 전국을 독점하고 있는 가운데 예외적인 경우 발전사업자가 발전용 전기설비 설치장소와 동일구내에 있는 점업설비 또는 사원용 주택에 대하여 공급지점마다 허가를 받아 공급하는 경우와 자가발전설비 설치자가 잉여전력을 한전이나 동일건물에 공급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전기직공급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발전사업자의 예외적 전기직공급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전기사업으로 간주하는 한편, 자가용 발전설비 설치자가 계열기업 등 자본적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대방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전기공급에 필요한 전기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한전으로부터 받은 전기를 재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는 특정전기사업자 제도의 신설과 함께 배전 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고자 한 것으로 특히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계열기업간 발전설비 공동이용,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전기직공급 등으로 전력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집단에너지공급대상 지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공급할 수 있다. 이 때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대상구역의 범위와 전기사용자의 구성이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신설된 특정전기사업자로 간주하여 한전의 보완공급 및 전기탁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열병합발전소 등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전기직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다만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특정전기사업자로 간주되기 위한 기준은 시행령으로 규정될 것이지만 이미 한전이 공급하고 있는 구역에 대하여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력공급을 개시함으로써 과도한 설비중복이 발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거나, 전기사용자의 종별구성이 요금이 비싼 상업용이나 주거용에만 한정되는 경우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

한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3) 選擇供給約款制度 도입

현재 전기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일반전기사업자는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전기공급규정을 정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전기공급규정을 전기공급약관으로 개편하여 전기공급조건이 사적계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인가대상인 기본공급약관외에 전기설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일반전기사업자 또는 특정전기사업자가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공급약관제도를 도입하였다. 예컨대 피크시간대에 벌칙요금을 부과한다는 조건하에서 비피크시간대에 우대 할인율을 적용하되 그 벌칙율과 할인율을 비례적으로 증가시키는 다양한 요금체계를 선택약관에 규정하고 이들 중에서 기업 등 대규모수용가가 자신의 전력소비 패턴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선택약관에 대하여는 인허가나 신고 등 일체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기공급규정의 약관제도로의 개편을 통하여 전기사용자의 의무뿐 아니라 권리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전기사용자 위주의 운용을 기하고 요금제도 수립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부하평준화를 위한 전기사업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다.

### (4)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촉진

개정전기사업법에서는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현행법상

전력수급에 있어 대체에너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개정안에서는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대체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전력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일반전기사업자가 대체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전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매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에너지를 화석에너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절실하며 최근 제주시의 제주행원 풍력발전단지 등 풍력발전이 상용화된 상황에서 당장에는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미래에는 경제성확보가 가능하고 기술수출도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기술집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고자 한 것이다.

### (5) 原子力發電 관련 사업에 대한 外國人投資 제한

전기사업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 관련 전기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행법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근거한 재정경제부 고시 등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이 운영하는 발전사업, 송·배전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기업에 대하여 원자력발전 사업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지정,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사업 승인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력산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되 국가안보 및 핵확산금지조약의 엄격한 준수와 관련된 원자력발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핵연료주

기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6) 政府規制의 획기적 완화

현행법상 전력산업의 공익·독점적 성격 등에 입각하여 전력산업에 대하여는 안정적인 전력수급, 소비자 보호, 안전관리 등을 목적으로 사업허가 등 각종 인허가, 공사계획인가, 각종 안전검사 등 체계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업법상 전력산업에 관한 42개 규제제도중 20개를 과감히 폐지하고 13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전기설비 설치허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양도인가, 전기사업 휴지·폐지의 인·허가 등이 폐지된다. 또한 기업 등 전기수용가의 경우 전기설비 용접검사, 전기공사계획 변경 및 공사중지명령이 폐지되어 불편이 줄어들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 대표자의 자격제한이 폐지되어 경쟁촉진으로 인한 비용절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

<표 2> 규제완화 내용

| 주요 폐지 규제                  | 주요 개선 규제  |
|---------------------------|---|
| - 전기사업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승계신고 | - 발전사업자의 타에 대한 공급허가제를 신고제로 개선                       |
| - 일반전기사업자의 겸업허가           | - 자가용설비설치자 전기직공급범위 확대                               |
|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양도 등에 대한 인가 | - 전기공급 선택약관제도 도입                                    |
| - 전기사업의 휴지, 폐지 및 법인의 해산허가 | - 전기설비공사계획 신고 중 저압자가용설비 신고제 폐지                      |
| - 전기사용의 제한                | -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 개선<br>· 검사신청시기를 검사일 10일전에서 7일전으로 완화   |
| - 일반전기사업자의 업무방법 개선명령      | - 전기설비 정기검사 개선<br>· 자가용 전기설비의 검사주기연장                |
| - 수급조절명령                  | -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br>·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의 보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
| - 전기설비 설치허가               | - 안전관리 담당자 선임의무 범위축소<br>· 휴지중인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선임의무 면제   |
| - 임시공사의 신고                |   |
| - 임시공사계획 변경 및 중지명령        |   |
| - 전기설비 용접검사               |   |
| - 영업소 등 출입확인 점검           |   |
| - 전기안전관리규정 작성비치 및 기록유지    |   |
| -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 대표자의 자격제한  |   |
|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의무           |   |
|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의무         |   |
| - 준용사업 허가                 |   |
| - 전기사업자 등의 업무보고 명령 및 출입검사 |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예정 사항 포함                            |

도 전기사업자에 대한 업무보고 명령 및 전기사업자와 전기수용가 출입확인 점검 등 행정기관의 규제가 폐지되어 불필요한 부조리의 소지를 제거하게 된다.

중요한 규제폐지의 예를 들면, 전기설비 설치허가가 폐지되어 기업의 자율에 따른 설비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신청서류준비 등 허가신청에 따른 각종 업무부담을 경감하게 되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2년에 한번이상, 20시간씩 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삭제됨으로써 교육참가에 따른 업무공백 및 비용부담을 해소하였다. 참고로 '98년 1년간 12,000명이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였고 3일에 걸친 교육에 1인당 교육비는 57,000원이 부담되었으며, 그동안 고용주 입장에서는 교육비부담과 업무공백의 측면에서, 안전관리담당자 입장에서는 형식화되고 실효성없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폐지론이 대두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정 전반에 있어서의 규제개혁이 강도높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

산업의 경쟁촉진 및 효율제고를 위하여 획기적인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이번에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가 획기적으로 완화되어 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한편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4. 맺는말

정부가 수립한 전력산업구조개편 방안에 의하며 앞으로 한전의 발전부문이 분리되어 다수의 발전 자회사가 설립될 것이 확실시 된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제도의 수립, 정부규제기능의 재정립, 기업분할 및 신설에 따른 조세 등 부담면제 등을 위하여 電力産業 關聯法制의 전면적인 改編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98년도 전기사업법 개정은 과도적인 제도를 내용으로 한다고도 하겠으나 『電力 부문 市場機能 創出』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며 전력산업인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에 의하여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